

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(안)

의안 번호	2018 -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8.1.
제출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(2016년 특별지원사업)으로 추진된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에 의거 정부의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을 설치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개요

- 사업명: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
- 사업자: 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(대표: 표재홍)
- 발전용량: 52.36kW
- 사업비: 163,500천원(발전소특별회계 전력사업기반기금-국비)

나. 추진사항

- 2016.10.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
- 2017.05.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(국비)
- 2017.09.: 개발행위(공작물설치) 허가 통보

다. 공작물설치 대상 재산의 표시

위 치	건축 면적	태양광 설치면적	용 량	사용허가신청자
합 계	648m ²	383.04 m ²	52.36kW	
남상면 행정복지센터 (남상면 무촌리 632-2)	465m ²	305.62 m ²	38.76kW	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 대표 표재홍
남상면 복지회관 (남상면 무촌리 632-2)	183m ²	77.42m ²	13.60kW	"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
 - 허가기간: 허가일로부터 10년간
 - 연간 사용료: 1,457,290원(부가세 포함)
 - ※ 산출내역: 재산평가액(공시지가×건축부지면적×옥상지수)×50/100×1.1(부가세)
 - 철거(원상복구)비용: 7,335,000원(보증보험 보증서 징구)
 - ※ 산출내역: 태양광설치 52.36kW 철거공사 설계비 산출

마. 연간 예상발전 수익 및 용도

○ 연간 예상발전 수익: 13,409천원

구 분	인증서 판매분(한전)	SMP 판매분(전력거래소)	비 고
산 출 액	8,620천원	4,789천원	
산출근거	설 치 용 량×일 평 균 발 전 시 간 ×365일×가중치×인증서 가격	설 치 용 량×일 평 균 발 전 시 간 ×365일×SMP	
산출산식	52.36 kW × 3.58 × 365 일 ×1.2×105원	52.36kW×3.58×365일×70원	

※ SMP: 생산량만큼 kW당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가격

○ 수익금 사용: 남상면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(체육대회 행사시 지원 등)

3. 관련법규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 제26조
-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

4. 위치도 및 현황사진(남상면 무촌리 632-2)



위치도

현황사진

관 련 법 규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

제12조(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 ① 군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생산하는 신·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부의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.

③ 군수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, 임대요율은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